

상당거수 신고거수
↓
2

성폭력센터 [교수기관
성인
성폭력]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신규 대조표

위원성명 :

개정안심의일: 2012. 11.13

개정일: 2010.12.01

제정일: 2000.10.10

원안	개정안	의견개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처리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이 성폭력 및 성희롱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가해자에 대한 처리 및 재발방지 교육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2012. 11. >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7. 12. 21.>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7. 12. 2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 학교의 통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의 학칙을 적용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에는 연세대학교 및 부속 기관(연구소, 센터, 연구원 포함)에서 일하는 모든 교강사, 연구원, 직원(임시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국내외교환학생 등 모든 재적 학생 포함) 등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가해자,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개정안 2012. 11. >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 피해자는 사건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 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건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희롱·성폭력상담실 <개정 2007. 12. 21.>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2012. 11. >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 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건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성평등 상담실<개정안2012. 11. >	
--	--	--

제6조 (설치) 학생복지처 내에 ~~성화동~~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0. 6. 7., 2007. 12. 21.> 제7조 (구성) ①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전문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6조 (설치)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 내에 성평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안 2012. 11. > 제7조 (구성)<개정안2012. 11. > ①상담실의 운영과 업무에 대하여는 성평등센터장이 총괄한다. ②상담실에는 성폭력에 관한 현장과 이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원을 둔다. ③ 내담자의 특성상 외국어를 필요로 하거나 단체교육이 필요할 때 등, 상담원의 판단에 따라 객원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④ 성평등상담실에는 상담, 교육 등을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안2012. 11. > 1.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	--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6.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교육 및 제발방지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교학부총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성화통-성폭력상담소장으로 하고 추천직위원은 교수위원 3인, 직원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한다. 교수위원(당연직위원과

3.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4.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5.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제발방지 교육
6.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7.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보존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안2012. 11. >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교학부총장(위원장), 학생복지처장, 성평등센터소장, 젠더관련 전공교수, 대학원부원장 등 4~5인으로 하고, 추천직위원²⁾은 교수위원 3인, 직원위원³⁾ 3인, 학

↓
대행위원(대행위원은 없다)

이제 한 부분(세부전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
중거 (중거는 아니다)

전공자 = 성폭력 관련 전공에 대한 인(인)

추천직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처리 회의 시 추천직위원(교수,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해당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개정 2010.12.1, 2010. 6. 7, 2007. 12. 21>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남녀위원을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생위원 3인으로 한다. 교수위원(당연직위원과 추천직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처리 회의 시 추천직위원(교수,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해당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개정 2010.12.1, 2010. 6. 7, 2007. 12. 21,<개정안2012. 11. >> ②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성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 등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안2012. 11. > ⑤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남녀위원을 동등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	--	--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 요구 또는 발의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피해자 보호 4. 가해자의 징계(구체적 내용과 수위포함) 요구 또는 발의<개정안2012. 11. > 5.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내용과 수위 결정<개정안2012. 11. > 6.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7. 정식 신고, 접수되지 않은 사건일지라도 성평등센터가 제보나 상담 등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고, 위원장은 사건 당사자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해 소급, 확인해 줄 것을 요청, <u>가해자로 확인된 자를 공식 기록에 남기고</u>, 적법한 징계 내용과 수위를 결정할 것을 발의 <개정안2012. 11. >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	상당자의 의견을 피해자의 면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볼 수 있는 것 피해자의 면담 〈소급 12. 5년〉 = 재상조치
---	--	--

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12. 21.>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상담실은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상담실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 2012. 11. >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상담실은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상담실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개정안 2012. 11. >

$\frac{2}{3}$ 찬성의 과반수의 찬성

(14조 중 9%)

59% + 3% $\Rightarrow$ 8%이 7/10

강제성

$\Rightarrow$ 가해자가 입증하는

(인정) 상반되는 때)

③<삭제> ④상당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상당실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③<삭제> ④ 성평등센터는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안2012. 11. > 제15조 (심의·의결) ①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성평등센터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안 2012. 11. >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안	
---	--	--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삭제 2007. 12. 21.>	2012. 11. >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③위원회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개정안2012. 11. >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삭제 2007. 12. 21.>	
--	---	--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2장 제1절, 제6조, 제10조 제1항, 제 13조,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10조 제1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2010.06.07

제정일: 2001.03.15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18조에 의거하여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 등이 가해자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2장 제1절, 제6조, 제10조 제1항, 제 13조,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10조 제1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1항)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일: 2010.06.07

제정일: 2001.03.15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 18조에 의거하여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제2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의 학칙을 적용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연세대학교 및 부속 기관(연구소, 센터, 연구원 포함)에서 일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하는 모든 교강사, 연구원, 직원(임시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국내외교환학생 등 모든 재적 학생 포함) 등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가해자,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개정안2012. 11. >	
②규정 제3조에서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라 함은 연구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및 교내 입주기관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조(성희롱·성폭력상담실장) (삭제)<개정안 2012. 11. >	
~~제3조 (성희롱·성폭력상담실장)~~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 12. 21.>~~	제4조 (전문상담원의 자격) 성평등 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전문상담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전문상담원의 자격)~~ ~~전문상담원은 규정 제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① 규정 제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 ② 성폭력 상담 현장경험이 있는 자 ③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젠더감수성교육, 의사소통교육, 다문화 감수성 교육 등을 기획하고	

제5조 (전문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예는 1인의 전문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전문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성폭력 예방교육) ①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학기 1시간이상 실시한다. ②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운영할 수 있는 자 제5조 (전문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전문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안2012. 11. > 제6조 (성폭력 예방교육) ①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학기 1시간이상 실시한다. 특히 <u>학생(대학원생 포함)의 경우</u> 긴급한 성폭력 예방교육 참가 시에만 학생복지처 혹은 학생회가 주관하는 제행사(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새내기배움터, 농촌봉사활동, 학생회와 동아리 대표자 임원 및 대표자들의 모임 포함) 등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안2012. 11. > ②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성폭력 정의<신설. 2012. 11. > 2.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 <u>학생복지처</u>
---	---	-----------------------

1.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학칙에 의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위원회는 규정 제10조의 당연직 위원 4인, 교수평의회가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개정 2010. 6. 7., 2007. 12. 21.> ②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칙에 의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개정안 2012. 11. > 6.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위원회는 규정 제10조의 당연직 위원 4~5인, 교수평의회가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연세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개정안2012. 11. >개정 2010. 6. 7., 2007. 12. 21.> ②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	--

제8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①<삭제 2007. 12. 21.> ②<삭제 2007. 12. 21.> ③~~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 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제9조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8조 (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①<삭제 2007. 12. 21.> ②<삭제 2007. 12. 21.> 제9조 (특별위원회) ①성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제심의 요청이 있 을 시 특별위원회를구성 한다.<개정안2012. 11. > ②특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들과, 위원장이 새 로 추천한 3명의 교수위원(직원이 사건 당사 의 경우 노조위원장이 새로 추천한 3명의 직 원, 학생의 경우 학생회,여학생회,원우회가 추 천한 각 1명의 학생)으로 구성한다.<개정안 2012. 11. > 제10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	--

제11조 (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 시 그 피해자와 동성의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성의 전문상담원이 참여한다. <개정 2010. 6. 7.> ③전문상담원은 상담 시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전문상담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 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피신고인,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회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 시 그 피해자와 동성의 전문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평등센터 소장이 추천하는 동성의 객원 전문상담원이 참여한다. <개정안2012. 11. ><개정 2010. 6. 7.> ③전문상담원은 상담 시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전문상담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 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피신고인,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성평등센터 소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회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개정안	
---	---	--

⑦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①<삭제 2007. 12. 21.> ②심의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피신고인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⑤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2012. 11. > ⑦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혹은 대책위위 결정에 따라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개정안2012. 11. > 제12조 (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①<삭제 2007. 12. 21.> ②심의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피신고인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⑤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	--	--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⑦피해자는 특정위원회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6항, 제7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 및 조치) ①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개사과는 연세춘추, 상담실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한다.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⑦피해자는 특정위원회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6항, 제7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 및 조치) ①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피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기재한 공개사과문을 작성, 공표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상담실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는 가해자 비실명으로 한다. 혹은 학생복지처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사건 경위와 처벌 내용을 성평등센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전 연세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개정안2012. 11. >	
---	---	--

④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가해자 재교육은 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⑦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⑨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⑩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③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은 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안2012. 11. > ④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⑤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지정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⑦성폭력 행위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⑧위원회는 가해자가 재심의 요청 없이 징계 및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발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	---	--

경우, 가해자의 동의없이도 피해자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할 수 있다.

⑩위원회는 규정 제5조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1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재심의)

①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포함한 사건공개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규정 제5조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하에 1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재심의)

①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

④사건당사자들의 재심의 요청이 있을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들과 위원장이 새로 추천한 3명의 교수위원(직원이 사건 당사의 경우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3명의 직원, 학생의 경우 학생회,여학생회,

제15조 (기록 및 자료보존) ①상담실은 성폭력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②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삭제 2007. 12. 21.> (3)(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삭제>, 제12조 제1항<삭제>,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 제1항, 제11조 제2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원우회가 추천한 각 1명의 학생)으로 구성한다.<개정안2012. 11. > 제15조 (기록 및 자료보존) ①상담실은 성폭력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내용을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②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조사, 처리과정 등의 전과정의 기록을 보존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삭제 2007. 12. 21.> (3)(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삭제>, 제12조 제1항<삭제>, 부칙 제2조<삭제>)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7조 제1항, 제11조 제2항)은 201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	--

-
- 1) 성폭력 사건 당사자로 대학원생이 개입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 2) 교수평의회가 추천한다.
 - 3) 직원노조가 추천한다.